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변호사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7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변호사등에게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및 허용되는 광고 수단 추가(안 제23조)	3
2. 변호사등의 광고 심사를 위한 ‘광고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3조의2 신설)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소영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1.
3. 회부연월일 : 2024.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 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규정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변호사등의 광고 제한 규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현행 규정상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등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 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Ⅲ. 검토의견

1. 변호사등에게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및 허용되는 광고 수단 추가(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u>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u> 광고할 수 있다.	제23조(광고) ① ----- -----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 -.
<신설>	1. 「 <u>방송법</u> 」 제2조제1호의 방송 중 <u>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u> 2. 「 <u>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의 <u>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같은 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u>

현행	개정안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u>대한변호사협회가</u>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u>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u>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7호의 지능정보서비스 5. 그 밖에 전광판, 벽보 등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 대통령령으로 ----- ③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는 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행	개정안
<u>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u> <u><신설></u>	<u>심사 기준이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광고심사위원회에 심사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광고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 <u>⑤ 광고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은 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u>

- 개정안은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안 제23조제2항제7호), 변호사등에게 허용되는 광고 수단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안 제23조제1항제3호)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¹⁾에 따른 ‘지능정보서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비스’(안 제23조제1항제4호) 등을 추가하는 내용임.

- 현행법은 법률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를 허용하되, 부당·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수임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부적절한 광고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제한되는 광고행위의 대강은 다음과 같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정하고 있음.²⁾

<변호사등에게 제한되는 광고행위>

「변호사법」에 따른 광고 제한
○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생략)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 2) 「변호사법」 제23조(광고)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광고에관한규정(내규)」에 따른 광고 제한
○ 광고내용 등의 제한 - 승소율, 석방율을 표시하는 광고 - 취급했거나, 취급 중인 사건 또는 그 의뢰인을 표시하는 광고 - 재판·수사 업무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표시하는 광고 - 수사기관, 행정기관의 처분,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 광고 - 수임 제한의 해제를 표시하는 광고 - 변호사 보수액에 관한 견적·입찰·비교 등을 표방하는 등의 광고 - 부당 요금을 표방하는 광고 등 ○ 광고방법 등의 제한 -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전자적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형태의 광고 -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살포하는 형태의 광고 - 운송수단(자동차·기차·선박·비행기 등)의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부착·게시하는 형태의 광고 등

주)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광고에관한 규정(내규)」 제4조 및 제5조의 내용임.

- 현행법과 같이 변협이 변호사등에게 제한되는 광고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일종의 자율규제에 해당하는바, 업계의 이익이나 필요성에 따라 규제의 구체적인 수준이 임의로 조정될 여지가 있어 공공성을 담보하여야 하는 변호사의 특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광고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변호사등의 광고행위에 대한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에게 제한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으나,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의 경우 해당 자격사법에 광고의 내용이나 형식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각 전문자격사단체의 내규에 의해 자율적인 광고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직업별로 제한되는 광고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방식>

구 분	규정방식	내용
의료인	대통령령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④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 중개사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장관고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리사	협회내규	「대한변리사회 회규 변리사 업무 관련 광고 규정」 제4조(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변리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 11. (생략) 제5조(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③ 변리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1. ~ 5. (생략)

구 분	규정방식	내용
세무사	협회내규	「대한세무사회 윤리규정」 제3조(징계사유) 회칙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 18. (생략) 19. 회원이 표찰, 간판, 신문, 잡지 및 기타 광고매체에 게재하는 광고, 선전문서(인사장 포함)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세무사의 품위를 실추케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오신케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 사. (생략)
법무사	협회내규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표시·광고규칙」 제4조 (광고 등 내용에 대한 제한) 법무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 6. (생략) 제5조 (광고 등 방법에 대한 제한) 법무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1. ~ 6. (생략)

주)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말함.

- 한편, 변호사들에게 허용되는 광고 수단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와 「지능정보화 기본법」³⁾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를 추가하는 안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를 연결하는 이른바 변호사 소개·광고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플랫폼 사업자는 변호사 아닌 자(이하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회원으로 모집한 뒤, ① 변호사들의 경력·전문분야·연락처·상담료 또는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수임료 등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고 의뢰인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변호사를 검색하고 상담을 예약할 수 있게 하는 형태(광고형)나, ②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을 기재하도록 한 뒤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적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형태(중개형) 등이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는 변호사로부터 변호사 관련 정보의 게재에 따른 요금(광고비)을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변호사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매체는 제한되지 않으나,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들은 제한될 수 있고,⁴⁾⁵⁾

「변호사윤리장전」(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

4) 제23조(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5) 헌법재판소는 “소비자는 변호사광고를 통하여 생활영역 안에서 가장 쉽게 법률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며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어떤 변호사가 어떠한 업무를 주로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순기능이 많다. 물론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객관적 사실의 과장 등에 의한 소비자의 현혹 현상이나 변호사업 전반에 대한 품위나 신용의 훼손이라는 역기능도 존재하므로 변호사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광고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2021헌마619)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아야 하므로⁶⁾ 위와 같이 플랫폼을 매체로 활용하는 변호사등의 광고행위로 제한될 소지가 있음.⁷⁾

-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로 활용하는 변호사등의 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변호사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광고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법률시장에서 변호사 사이의 적극적인 경쟁을 도모하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편재성을 해소하고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위법성 논란은 사업자의 영업방식과 그 형태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변호사 업무 광고 매체에 ‘인터넷 매체’ 등을 명시하더라도 이들의 영업활동에 관한 위법성 논란은 계속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3. (생략)

「변호사윤리장전」(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1조(원칙) ④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

7) 다만, 법무부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유형을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나누고, ①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이므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고, ② 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업체는 그 계약 체결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형태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 2021.8.24. 법무부 설명 보도자료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관한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 한편, 개정안에 관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법무부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것인지는 법률시장의 공정한 경쟁, 법률소비자 보호,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광고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규율 필요성⁸⁾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⁹⁾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것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변호사 광고 규제의 취지 및 규율 체계, 현행법이 변호사협회에 자율적인 규제 권한을 부여하였던 배경,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 개정법에 대한 장·단점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임.¹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개정안이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의 규율, 직무활동, 자격심사, 징계 등을 변호사의 자율에 맡긴다고 보는 변호사 자치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고,

8) 헌법재판소는 2022. 5. “사회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한할 광고의 방법과 내용을 적절히 규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단체로서 전문성을 가진 변협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그 범위를 정하게 할 필요성 있다”고 판시(2021헌마619)

9) 법무부 의견회신(2023. 3.)

10) 법원행정처 의견회신(2024. 8.)

온라인 플랫폼에서 법률상담이나 사건 등에 관하여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현행법이 금지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방식을 살펴볼 때, 플랫폼 사업자 자신이 법률사무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양 행세하거나,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와 변호사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소비자와 변호사 사이를 중개하고 있고, 단순한 광고대행을 넘어 직접 법률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현행법이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금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등 운영금지 규정¹¹⁾을 잠탈하고 있거나 언제라도 이를 잠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온라인 플랫폼은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변호사의 경력이나 실력을 윤색하여 법률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¹²⁾¹³⁾

11)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 마. (생략)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12) 대한변호사협회 의견회신(2024. 8.)

-
- 13)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변호사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금지광고의 범위는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일부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만 대한변협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광고와 관련한 변협의 변호사 징계처분도 법무부로부터 전부취소 결정을 받는 등 자율권한을 오남용하여 소속 변호사들의 광고의 자유를 침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함. (2024. 8.)

2. 변호사등의 광고 심사를 위한 ‘광고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3조의2(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광고심사위원회) ① 변호사등의 광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u> <u>② 광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광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소속된 대한변호사협회 혹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위촉한다.</u> <u>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u> <u>1. 제7조제1항에 따라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u> <u>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u> <u>3. 그 밖에 표시·광고의 공정</u>

현행	개정안
	<u>화 또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u> ④ <u>광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u>

- 개정안은 변호사등의 광고를 심사하기 위한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광고심사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그 구성 등에 관하여 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¹⁴⁾

14) 유사한 취지로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중에는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 있는 광고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도 있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869,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현행	개정안
제23조(광고) ① (생략)	제23조(광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	7. ----- -----

- 현행법은 변호사등의 특정한 유형의 위법한 광고행위¹⁵⁾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 외 위법한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도 징계의 대상이 되므로,¹⁶⁾ 법상 금지되는 광고행위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볼 수 있음.

안 제23조제2항제7호와 같이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더라도, 광고 규정 위반을 포

현 행	개 정 안
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u>대한변호사협회</u> 가 정하는 광고	----- -- <u>대통령령</u> 으로-----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u>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u>	<삭 제>
④ <u>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u>	④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변호사등의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한 경우

16) 제23조제2항제3호부터제7호에 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법에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제23조(광고) ① (생략)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 4. ~ 7. (생략)

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바,¹⁷⁾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의 근거가 되는 광고 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의 명확성 및 완결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은 다음과 같음.

-법무부는, 광고심사위원회는 변호사의 광고 규정 해석 및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고 변호사법 등에 위반되는 광고 행위를 심사·제재하여 변호사 광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법률소비자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 광고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시장의 공정한 경쟁, 법률소비자 보호,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광고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규율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¹⁸⁾

17) 「변호사법」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18) 법무부 의견회신(2023. 3.)

-대한변호사협회는,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소비자단체 및 비변호사가 포함되도록 하고 변호사의 비율을 제한한다면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법률적 영역이 기업이나 소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단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법률적 영역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자치권의 본질적 부분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¹⁹⁾²⁰⁾

문 의 처
02) 6788-5060

19) 대한변호사협회 의견회신(2024. 8.)

20)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정보제공에 있어서 소비자와 변호사단체의 이익은 대립될 수 있으므로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의 비율을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그 밖에 소비자단체 외의 비변호사는 법무부, 국회 등 별도의 추천 주체도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024. 8.)